타워크레인 대책 관련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9조~제50조, 별표8 및 별표8의2)

○ **(원청 책임강화)**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영상 기록 보존**, 사용 중 장비 간 또는 인접구조물 등과 충돌위험시 **충돌방지조치**

* 영상기록장치 및 충돌방지조치는 공포('18.3.30)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타워크레인 **신호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2H → 8H)

* 신규 신호수는 특별교육(8시간) 실시 후 배치하고, 기존 신호수는 공포('18.3.29) 후 1개월까지 추가교육 실시(교육자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재)

○ **(임대업체 책임강화)** 설치·해체 작업이 포함된 기계등 대여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하는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6조)

○ **(전담 신호수)** 타워크레인 사용 작업 시 작업자와 운전자 사이에 타워크레인마다 **신호수를 두도록 의무화**

3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별표1, 별표 6)

○ **(설치·해체작업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신규취득자를 위한 교육 강화(36H → 144H, 현장실습 108시간 포함)

○ **(보수교육 신설)** 설치·해체작업 근로자의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5년마다 36H) 의무 신설

* '13.12.31. 이전 자격 취득자(1년 이내), '14.1.1. 이후 자격 취득자(2년 이내)

○ **(재교육)** 설치·해체 작업자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설치·해체 자격 취득교육(144H) 재이수하여야 함

참고 1 타워크레인 하위법령 관련 Q&A

Q1. 이번 하위법령은 바로 시행되나요?

A1. 이번 타워크레인 관련 법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합니다. 다만, **영상기록 및 충돌방지조치**는 '18.3.30(금) 공포 후 3개월, **신호수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공포 후 1개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Q2. 타워크레인 영상기록 및 보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에 대해 인근 건물 등에서 전반적 영상을 기록해야 하며, 기록을 위한 장치는 디지털카메라, 핸드폰, CCTV 등 촬영기기로 기록보존(해당 공사 종료일까지)하면 됩니다.

Q3.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A3. 타워크레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타워크레인 교차운영, 충돌방지시스템 설치 등 각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면 됩니다.

Q4.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은 사업주 자체교육 또는 외부 교육기관 모두 인정이 가능하며, 기존 특별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6시간 추가 이수하여야 하고, 신규 신호수는 8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타워크레인 특별안전보건교육자료(책자, 동영상, 교안, 리플릿) 등 게시

Q5. 타워크레인 신호수 배치는 누가 하나요?

A5. 원청, 하청을 불문하고 실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업주가 작업자와 조종사 사이의 신호를 전담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면 됩니다. 다만, 다수의 하청이 복합공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청에서 일괄 배치하여도 무방합니다.

Q6.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 안되나요?

A6.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배치된 신호수는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도 무방합니다.

Q7.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중 신호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A7. 타워크레인 작업 중에 신호가 필요한 경우,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자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30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2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Q8.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의 자격 취득교육이 강화(36H→144H)되었는데, 기존 취득자도 강화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8. 기존 설치·해체 자격취득자는 별도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를 통한 자격취득자의 경우, '13.12.31.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이내, '14.1.1.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이내에 보수교육(3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2 타워크레인 하위법령 주요 개정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 중심의 고용노동부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주체별 안전관리의무 대폭 강화"

–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 발표의 후속조치로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시행

□ 고층 건물공사에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및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 **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18.3.30(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 먼저,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건설사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사용 중에는 장비나 인접구조물 등과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타워크레인마다 특별안전보건교육(8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자와 조종사 사이의 신호를 전담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 現) 2시간 → 改) 8시간(크레인 작업과 관련된 신호체계 및 방법)

□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설치·해체업체에 기계의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 설치·해체작업 시에는 작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에 작업위험정보와 안전작업절차를 주지**시키도록 하였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강화된다.

○ 현재는 누구나 3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실습교육 위주로 교육방식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연장(144시간)***하는 한편 자격취득 이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하였다.

* 現) 36시간 → 改) 144시간(현장실습 108시간 포함)

< 경과조치 >

▲ '13.12.31.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14.1.1.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보수교육(3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가 작업 중에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144시간)**을 이수해야만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타워크레인의 관리주체별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안전수칙 준수 관행이 원만히 정착될 때까지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3 타워크레인 안전보건자료 게시

1.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내 「안전보건자료실」 클릭

2. 유해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기계기구/타워크레인작업에서 조회



② 「안전보건자료실」 내 유해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기계기구/**타워크레인작업 이동**

③ 탭(책자/교재, 동영상, 교안(PPT), 리플렛(OPL))별로 원하는 **자료 다운로드 활용**